

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·납부기한 연장, 징수유예,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- 확진환자·격리자, 방문 사업장, 기타 간접피해를 입은 영세 사업자 및 중소기업 등 **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모든 납세자가 대상입니다.**

① 신고·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.

- 부가가치세 등을 기한 내 신고·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**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**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②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부가가치세, 종합소득세 등 고지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**최대 9개월(체납처분유예 : 1년)까지 납부기한 연장**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③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아래의 사업자는 **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**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.
- 확진환자 발생 및 경유한 사업장이 소재한 시·군·구의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으로
 - 관광업, 여행업, 공연 관련업, 음식·숙박업(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), 여객운송업, 병·의원,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원대상입니다.
 - * 이 외는 최대 7천만원까지 납세담보 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음

④ 세금납부가 어려운 영세자영업자·소상공인에게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.

- 매출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**체납액 5백만원 미만 영세자영업자·소상공인**에 대해 압류, 매각, 전화독촉 등 체납처분을 **6월 말까지 직권으로 유예**하고 있습니다.
 - 이 외의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승인하고 있습니다.

5 피해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를 유예·연기·중지하고 있습니다.

○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**세무조사 부담없이**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**조사착수 유예¹⁾, 조사 연기²⁾ 또는 중지³⁾**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- 1) (조사착수 유예) 세무조사 착수를 일정기간 보류
- 2) (세무조사 연기)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
- 3) (세무조사 중지)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

- 다만,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됩니다.

6 「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○ 코로나19의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**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세정 측면에서 피해 극복을 위해 도와드리겠습니다.**

<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>

세정지원센터	담당자	연락처
서울청 징세과	팀장 이 철	02-2114-2502
중부청 징세과	팀장 이용안	031-888-4342
부산청 징세과	팀장 박기식	051-750-7502
인천청 징세과	팀장 길수정	032-718-6502
대전청 징세과	팀장 심영찬	042-615-2502
광주청 징세과	팀장 강용구	062-236-7502
대구청 징세과	팀장 장시원	053-661-7502

7 신청 절차

○ (신고·납부기한 연장, 징수유예, 체납처분 유예) 관할 세무서에 **우편·방문 신청**하거나, 국세청 **홈택스*** (www.hometax.go.kr)에서 **온라인 신청**하실 수 있습니다.

* (접근경로) 홈택스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일반세무서류 신청 → 민원명 찾기에서 '기한 연장' 또는 '징수유예' 또는 '체납처분유예' 조회 →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

○ (조사연기·중지) 세무조사 사전통지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**조사관서(조사팀)에 세무조사 연기·중지 신청서를 제출**하시면 됩니다.

* 「세무조사 연기신청서」 및 「세무조사 중지 신청서」 서식은 국세법령정보 시스템(홈택스(www.hometax.go.kr)) 접속 → 「법령정보」에서 다운로드 가능